

등록금수납관리시스템 이용 추가계약서

_____ (이하 "대학"이라 한다)은 (주)하나은행 _____ 지점 (이하 "은행"라 한다)과 등록금 수납업무를 원활하게 하게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학교등록금 수납대행 계약서에 추가하여 등록금수납관리시스템(이하 "시스템"이라 한다)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 조(목적)

본 계약은 "대학"이 "은행"의 "시스템"을 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용어의 정의)

"시스템"이란 "대학"과 "은행"이 등록금 수납대행 계약을 한 후 "은행"이 "대학"의 등록금 수납계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각종 수납자료의 전송, 조회 등 수납관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.

제 3 조(이용약정 및 이용원칙)

① "대학"이 "시스템"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본 계약 외에 「등록금수납관리시스템 이용(신규, 해지)신청서」

의하여 "시스템" 이용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"대학"은 "시스템"사용에 필요한 각종 정보 (고객 ID, 학교코드 등) 를 별첨의 양식에 의하여 "은행"에게

제출하여야 한다

③ "대학"은 "시스템"에서 최초 신청한 ID, 학교코드로 사용자 인증한 후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부서, 전화번호를

입력하고 비밀번호를 반드시 변경하여 사용하도록 한다.

④ "은행"은 "대학"이 지정한 고객 ID 및 비밀번호의 확인을 통해 사용관리자의 정당성을 확인한 다음 "대학"

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하되 고객 ID 및 비밀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한 이상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

"은행"은 면책된다

제 4 조(수수료)

“대학”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따른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 5 조(서비스 이용시간)

“대학”이 “시스템”을 사용하는 시간의 제한은 없는 것으로 한다.

제 6 조(계약의 기간 및 해지)

- ①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
- ② “대학”이 “시스템”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“은행”에게 「등록금수납관리시스템 이용(신규, 해지)신청서」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 7 조(분쟁해결)

본 계약의 해석에 상호이견이 있는 경우 “대학”과 “은행”은 쌍방합의에 의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, 합의가 여의치 않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민사소송법이 정한 관할법원으로 한다.

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2 부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“대학”과 “은행”이 서명 날인하고 각 1 통씩 보관하기로 한다.

20

고객명(대학명) (인)

(주)하나은행 지점장(인)